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13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수진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의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당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의 이용권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임(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첫만남이용권 개요 >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전달체계)**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 → (시군구) 대상자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 ☐ 최근 5년간 첫만남이용권 지급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23만명에서 26만명 정도의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었으며 2025년에 지급된 아동은 26만 957명임.

< 첫만남이용권 지급 인원 >

(단위: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지급 인원	240,616	234,355	240,782	260,957

- ☐ 첫만남이용권의 법률상 지급대상은 출생아동이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는데(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 개정안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의 신청주의를 당연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러한 개정안은 첫만남이용권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출산 직후의 보호자가 별도의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 수급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26년 6월 9일에 법률 제21777호로 전부개정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첫만남이용권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아동수당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아닌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개정 전	개정 「아동수당법」(2026. 9. 10. 시행)
<신 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아동수당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주의를 당연지급으로 변경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898)을 발의하였는바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수당법 개정법률안 심사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9898)
법률 제21777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u> <신설>	법률 제21777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 ----- ----- -----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
---	--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어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